

국제어학원 규정

- 제정 : 1986. 01. 01
- 개정 : 1989. 03. 01
- 개정 : 1997. 03. 01
- 개정 : 1998. 05. 21
- 개정 : 2001. 03. 01
- 개정 : 2003. 03. 01

제1장 총칙

제1조(설립목적) 이 규정은 본 어학원에서 국제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본교 재학생 및 일반인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국제어학원은 수원대학교 부설 어학원(이하 “본 국제어학원”이라 함)이라 칭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국제어학원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-2번지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조직) 본 국제어학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어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1인과 운영위원 약간명, 사무직원 1인 및 실습조교 2인을 둔다.

제5조(원장) ① 원장은 본 국제어학원을 대표하며,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, 감독한다.

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사무직의 저우언은 총장이 정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본 국제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제어학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국제어학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국제어학원 강사 임용에 관한 사항
4. 강좌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5. 수강료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
6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국제어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

- 제8조(운영위원회 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③ 정기회의는 매년 6월 및 12월에 소집한다.
-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3장 과정

- 제9조(과정) ① 본 국제어학원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.
- ② 정규과정은 본 학기와 하계방학, 가을학과 동계방학이며, 봄학과 가을학기는 학사일정과 병행한다.
- ③ 특별과정은 필요한 경우에 개설한다.

제4장 수강등록

- 제10조(등록시기) 본 국제어학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11조(수강가격) 본 국제어학원의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에 대하여는 학력,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12조(수강원서의 제출) 본 국제어학원에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선발절차) 본 국제어학원의 수강자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4조(학습비) ① 수강생은 수강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수강료의 반환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반환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재정, 기타

- 제15조(재정) 본 국제어학원의 운영경비는 수강료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16조(회계) 본 국제어학원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, 회계연도는 수원대학교이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7조(해산) ① 본 국제어학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 국제어학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.
- 제18조(기타) ① 본 국제어학원의 개설과목 중 일정 과목을 일정시간 이상 수료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본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대학교 행정관례에 따르며, 필요한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